

한국노동

'97년 임단투 현황과 과제

류경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사대책국장

1. 들어가는 말

96년 5월 9일, 정부는 소위 문민정부의 마지막 개혁작업으로 '노사관계개혁'을 표방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 '노사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가·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동시에 기한다는 목표 아래 신노사관계 개혁을 표방하면서 참여협력적인 새로운 노사관계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WTO의 성립 등 90년대 들어 가속화하기 시작한 세계화의 흐름과 OECD의 가입에 따른 노동법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보장 등 여건 속에서 '노동기

본권의 보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 것이 그 주요한 목표이다.

이에 따라 금번 노동법 개정은 지난 87년의 노동자투쟁과 13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던 88년의 노동법개정 때와는 사장이 판이하게 달랐으며,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계계의 목소리가 강하게 실릴 가능성이 높았다.

계다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성립을 표방하고 진행되던 노동법 개정은 그 형식에 있어서 날치기로 처리되었고 내용도 노개위 수준의 기 합의된 내용에서 후퇴하여 자본 편향성을 드러냄으로써 노동계의 총

파업을 불러 일으키고 동시에 시행된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로 학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효화되기에 이른다.

2 노동계의 총파업투쟁과 노동법의 재개정

이러한 노동법의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여 한국노총은 2단계에 걸친 총파업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한국노총이 목적의식적으로 단행한 최초의 전국적인 통일투쟁이요, 배합투쟁이며 정치투쟁으로 평가된다.

이번 총파업투쟁은 노동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노동운동 전영의 사실상의 연대를 이끌어냈으며,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날치기 노동법을 무효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나 총파업투쟁의 결과는 노동의법을 완전 철폐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으며, 투쟁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이 미흡하였으며, 투쟁전략과 전술상의 오류가 있는 등 많은 한계점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날치기 노동법 무효화에 참여하였던 많은 노동대중들은 이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도출된 노동법 개정안을 보고 맹연자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개정된 노동법안은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정치활동, 그리고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부분적인 완화를 제외하고는 노조전임자의 급여 증지, 파업중 대체근로의 허용, 무노동 무임금 법제화 등 노조를 악화시키는 특소조

항들을 가득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한국노총은 97년 임단투를 맞이하면서 노동법의 특소조항을 무력화시키고 97년 대통령 선거 등을 포함한 정치활동 속에서 노동법 개정을 이루어내도록 결의한 바 있다.

3. 97년 임단투의 의미와 현황

1) 97년 임단투의 의미

이번 임단투의 특징은 개별기업 차원의 임금인상 문제 뿐만 아니라 날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보장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전임자의 급여 및 전임자 수 등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단체협약 상의 문제가 침해하게 부딪히 노사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자본측의 공세가 매우 강화되고 있는데 이를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97년 임단투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부쟁을 권장하였다.

개정노동법 중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취급하는 법제화는 노동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항으로 기업별 노조하에서 노조활동의 중해를 이루고 있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임금지급 급지는 노조 전임자의 숫자 감소와 활동의 제약을 불러 일으켜 노동조합 운동의 악화로 연결될 것이 분명하다. 경총은 노조 전임자 축소와 임금의 단계적 축소를 산하 조직에 지시함으로써 노사간의 마찰이 심화

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노동법 개정이 결코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노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97년 임단투 현황

(1) 전체적인 진행상황(아래 표)

(2) 기 타결된 산별현황(아래 표)

(3) 97년 사업장별 주요 쟁의발생 현황 (뒤 표)

3) 97년 임단투 특징

첫째, 97년 임단투는 예년보다 매우 늦게 진행되었다. 이는 노동법 날치기에 대한 총파업 투쟁 및 노동법 재개정 등으로 늦게 출발한 요인도 있으나, 노동법 개정

이후 자본측의 공세에 의한 노사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도 일정하게 작용하였다.

둘째,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예년에 비하여 임금동결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영세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해당되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 노동조합운동도 과거 고도성장 시대의 고임금 정책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워지는 여건이 다가오고 있으며, 향후 고용안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감지케 하고 있다.

셋째, 노동법 개정 이후 사용자측의 공세가 가중되어 교섭력이 취약한 단위사업장 및 공동대응 차원에서 연맹으로의 단체교섭 위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목적의식적으로 노동법을 무력화

(1) 전체적인 진행상황

임금교섭사업장	조합원수	진행사업장수	노조요구율	타결사업장수	진도율	회사위임동결	쟁의발생건수
3,230개	1,002,237	3,142개	13%	1,053개	34%	63개	20개

(2) 기 타결된 산별현황

산별명	조사대상	요구율	타결사업장	인상률 및 금액	비고
철도노조	1	19%	1	5.7%	타결
섬유노련(면방)	252	12.8%	53	5.83%, 57,500원	면방 5/15 조정, 업종별 공동교섭
항운노련	67		67	항만 4.5%, 육상5%	2/17 타결
자동차노련	600	15.7%	580	7.71%, 97,213원	3/26 총파업, 지역별 공동교섭
체신노련	9	18%	9	5%	1/1일부터 시행

(3) 97년 사업장별 주요 쟁의발생 현황

산별 연맹	지역	노동조합	주요 내용
자동차노련	전국	대도시버스노조	임금 15.7%, 상여금 505 인상(550%~600% 요구) 3/26 총파업 7.71% 인상합의 (97,213원)
금속노련	천안	포스코홀스노조	노동법개정 투쟁중에, 손배배상청구 5억 6천만원, 승급 106명 누락 4/12 노사합의하였으나 합의사항 이행거부 6/18일 조정신청
	안양	대한제작소	회사측 폐업통보, 조합원 125명 중 41명 폐직금 공동관리
	전북	기아특수강	6/14 회사측의 부서당 5% 인원감축 요구 6/23 철련투쟁 선포
화학노련	부천	한국호세코	임금(시급 3,067원) 등 단협 14개항 요구 사측 노조전원자 폐지등 25개항 요구 5/8 조정신청, 5/21 부분파업 6/11 노총, 화학 및 지역 조합원 공동집회, 6/21 원내 32일체 파업
	포천	성남화학	임금 12.68%
			사측 조정신청 이유로 노조위원장 사직공고 5/29 조정신청, 6/17 전면파업
금융노련	서울		임금인상 및 경부주도 행장인사 반대 3차례 유회집회
택시노련	전국		9월경 임금인상 및 계도개선 투쟁 준비중
	부천		8개 회사 개인택시 면허자격기준에 대해 비즈와 동일한 시의료 결위에 향의 5/8 시장실 결의, 5/23 부천시와 합의(비스 11년, 맥시 10년)
통신노련	서울	한국전화부	98년 민영화 방침 반대, 5/9 정보통신부 앞 집회
판광노련	서울	엠비서비 호텔	임금 11.66%(94,117원), 상여금 50% 요구 사측 전임자 축소 11차 교섭결렬, 5/2 조정신청, 5/12 조정종료
연합노련	서울	대한산업안전협회	단체협약 개선, 5/14 조정신청
	인천	인천불경워싱	임금교涉 5/17 조정신청

시킬 수 있는 임단투의 진행이나 시기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노동법 독소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기집중을 시도하였으나 각 연맹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상이하고 경기불황에서 오는 고용불안의 증가 및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기업별 체제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 및 조합원 의식 등으로 인하여 힘있는 임단투를 조직해 내지 못하고, 시기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4. 향후의 과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87년 노동자투쟁 이후 지난 10년간 양적, 질적으로 과거의 몇십년을 뛰어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특히 96년 12월 26일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종파업투쟁으로 저지해 내며 노동운동의 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법 제개정 과정에서 드러나듯 이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그동안의 노동운동의 성장 발전과 더불은 자본측의 노무관리의 체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제조업 생산적 노동자의 축소 등은 90년대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있다.

노무관리의 체계화와 작업환경에 대한 노조의 내용, 조직률의 하락, 기업별 노조의 고착화, 조합원들의 기업의식의 강화 및 노조참여의 약화 등 노조운동을 악화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1) 노동법의 무력화를 통한 노동법의 재개정 촉구

97년 3월 재개정된 노동법은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임단협을 통하여 이러한 독소조항을 무력화 시키고 노동법의 민주적 재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의 전개 및 교섭시기의 집중

개정 노동법에 의하여 자본측의 공세가 거세지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바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공동교섭, 공동투쟁으로 이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노동조합 조직의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되므로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여야겠다. 과거에도 면방 등의 업종별 교섭 및 자동차, 택

시 등의 지역별 교섭이 진행된 바 있고, 산별형태의 단위노조에서 공동교섭이 진행된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키도록 하며, 교섭시기를 집중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3) 97년 임단투 및 97년 대선활동의 연계

97년 임단투를 통하여 노동아법을 무력화 시키기로 하였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97년 대선 등 정치활동과 연계를 가지고 노동법의 민주적인 재개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대선 등의 정치 일정 속에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내는가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과정에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한 정당에 대해서 정치적 심판을 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4) 산별체제로의 전환 및 조직역량 강화

기업별 체제로는 자본측의 무한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특히 영세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금지하는 것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업별 의식의 한계를 넘고 산별로의 전환을 이룩하여, 조합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정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5) 연대활동의 강화

노동조직간, 그리고 민주적 제시민단체 외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